Sunshine GWANGYANG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45호 2026. 11. 11.(수)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26-2337호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광양시 조례 제2026-233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광양시 조례 제2026-2339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광양시 조례 제2026-2340호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56
광양시 조례 제2026-2341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광양시 조례 제2026-2342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광양시 조례 제2026-2343호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광양시 조례 제2026-2344호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74
광양시 조례 제2026-2345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광양시 조례 제2026-2346호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8
광양시 조례 제2026-2347호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2
광양시 조례 제2026-2348호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4

규 정

광양시 규정 제2026-479호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107
광양시 규정 제2026-480호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43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91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146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2361호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 148
광양시 공고 제2026-23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159
광양시 공고 제2026-240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160

회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7호

붙 임 :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상징물 관리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상징물 관리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매돌이 캐릭터:”를 “캐릭터:”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 1세대 마스코트

※ 미래소년 - 해아
(MIRAESONEON HAE-A)

(기본형)







※ 응용형 포함

□ 의미

-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광양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마스코트는 “미래소년 해아(어린아이)”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꿈과 희망에 찬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2세대 마스코트

2세대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GWANGYANG FRIENDS CHARACTER GUIDE 03

광양백운이 를 소개합니다 마스코트

백운산의 맑은 기운을 담아 건강하고 싱그러운 에너지로 광양을 소개합니다.

성격	활기차고 순수하며 든든한 이미지
특징	초록 산의 실루엣, 둥근 얼굴, 밝은 표정
키워드	자연 · 생기 · 신뢰





브랜드 컬러

메인 그린
HEX #8ED165
RGB 142 209 101
CMYK 32 0 52 18

딥 그린
HEX #429648
RGB 66 148 75
CMYK 55 0 49 42

살구 포인트
HEX #F89C87
RGB 248 156 135
CMYK 0 37 46 3

화이트
HEX #FEFEFE
RGB 254 254 254
CMYK 0 0 0 0

블랙
HEX #131211
RGB 19 18 17
CMYK 0 5 11 93

턴어라운드



앞모습 우측면 좌측면 뒷모습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 매돌이 캐릭터



□ 기정이 캐릭터


GWANGYANG FRIENDS CHARACTER GUIDE
08
기정이를 소개합니다
캐릭터
기정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기정떡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힘찬 메시지를 건넵니다.
성격 따뜻하고 밝으며 시민을 위로하는 이미지
특징 기정떡을 떠올리는 둥근 행태와 따뜻한 노란 포인트
키워드 따뜻함 · 위로 · 응원
브랜드 컬러
메인 옐로
HEX #FED871
RGB 254 216 113
CMYK 0 15 56 0
샌드 베이스
HEX #EAE5DA
RGB 234 229 218
CMYK 0 2 7 8
크림
HEX #FFF8DF
RGB 255 248 223
CMYK 0 3 13 0
비비드 골드
HEX #FDAE03
RGB 253 174 3
CMYK 0 31 99 1
블랙
HEX #111111
RGB 17 17 17
CMYK 0 0 0 93
원이라운드
앞모습
우측면
좌측면
뒷모습

□ 매향이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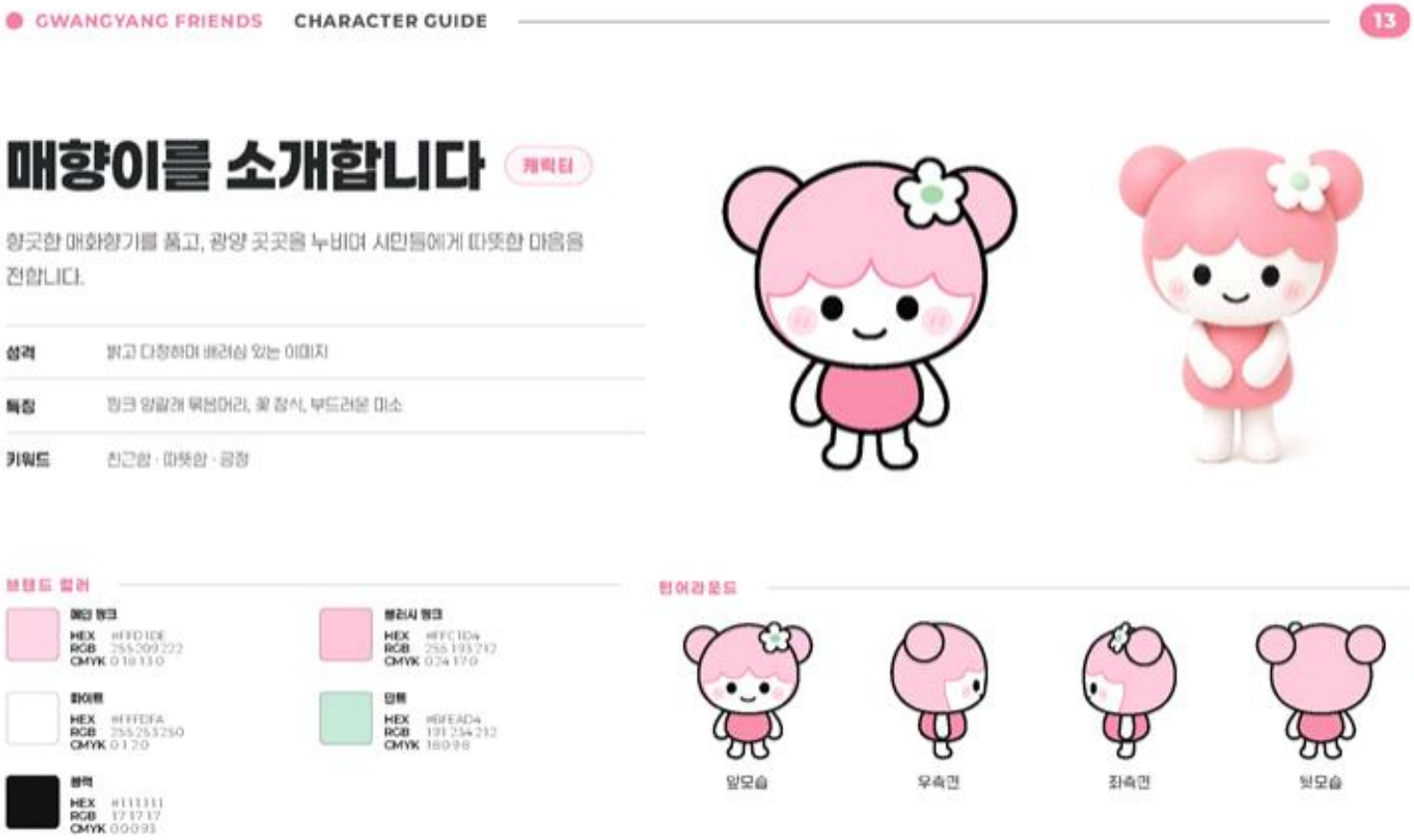
GWANGYANG FRIENDS
CHARACTER GUIDE
13
매향이를 소개합니다
캐릭터
향긋한 매화향기를 품고, 광양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격
밝고 다정하며 배려심 있는 이미지
특징
핑크 앙갈래 묶음머리, 꽃 장식, 부드러운 미소
키워드
친근함 · 따뜻함 · 긍정
브랜드 컬러
메인 핑크
HEX #FFD1DE
RGB 255 209 222
CMYK 0 18 13 0
블러시 핑크
HEX #FFC1D4
RGB 255 193 212
CMYK 0 24 17 0
화이트
HEX #FFFDFA
RGB 255 253 250
CMYK 0 1 2 0
민트
HEX #BFEAD4
RGB 191 234 212
CMYK 18 0 9 8
블랙
HEX #111311
RGB 17 17 17
CMYK 0 0 0 93
턴어라운드
앞모습
우측면
좌측면
뒷모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매돌이 캐릭터: 별표 4 5. ~ 7. (생 략)	제3조(상징물의 종류) ----------. 1. ~ 3. (현행과 같음) 4. 캐릭터: ----------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② (생 략) <신 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 면제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마스코트 <신 설>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1세대 마스코트 2세대 마스코트
[별표 4] **매돌이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매돌이 캐릭터 <신 설> <신 설>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 기정이 캐릭터 매향이 캐릭터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8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6명”을 “1,2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76명”을 “1,18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21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75					
3급	1	1				
4급	10	6	1	2	1	
5급	63	40	2	6	3	12
6급 이하	1,10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211명---- ----------. 1. ---------- 1,18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20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70					
3급	1	1				
4급	10	6	1	2	1	
5급	63	37	2	8	4	12
6급 이하	1,09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21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75					
3급	1	1				
4급	10	6	1	2	1	
5급	63	40	2	6	3	12
6급 이하	1,10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9호

붙 임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국 · 미래산업국 · 관광문화환경국 · 교육보육국 · 안전도시국 · 녹색도시국”을 “총무국 · 경제국 · 관광문화국 · 교육복지국 · 안전도시국 · 환경녹지국”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AI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제3조제5항제6호 중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을 “물품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홍보소통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중 “홍보소통”을 “홍보”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AI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용 생성형 AI 도입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시민AI 교육 및 지원

4. 시민 ·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5.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제4조의 제목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를 “(총무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복지국에 총무과,”를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 · 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 · 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 · 교육 및 표창 · 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 · 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7.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8. 기록관리 총괄 및 기록관 운영

9.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 · 협약 등

1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

11.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12.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13.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4.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16. 공동체 사업 총괄 · 기획 및 조정

17.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 · 운영

1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19.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사회연대경제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추진

21. 소통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시책 발굴

22.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23. 국제화 시책 및 해외도시 간 다각적 교류 추진

24. 지방세 부과 총괄

25.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26. 시금고 계약관리

27. 지방세 탈루 · 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처리

28.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29.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0.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31.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2.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 및 결정 · 공시

33. 세입 · 세출 · 결산 · 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34. 자금배정 · 수급 관리

3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3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3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 · 처분 등 관리 총괄

3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39. 커뮤니티센터 관리 · 운영 총괄

40.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41.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4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

43.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44. 개별공시지가 업무

45.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46.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47.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5조의 제목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를 “(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국에 투자산업과, 경제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 · 조정

2.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4.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벤처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 조정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8.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9.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3.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4. 노동조합 지원 관리

15.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6.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17.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8. 철강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9.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0.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1. 항만물류 · 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 · 지원정책수립 추진

22. 공유수면 관리 및 점 · 사용허가

23. 해양수산업무 전반

2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25. 민간개발 인·허가

26.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27. 국가산단 개발 및 인·허가

28. 국가산단 관리 전반

29. 용지 및 지장물 보상

30. 지능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31.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 관리 전반

32. 개인정보 및 보안 내부관리 계획 수립

33. 스마트시티 구축 및 추진

34. 통신 관리 전반

제5조의2의 제목 “(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를 “(관광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과, 관광개발과, 문화과, 체육과, 시설관리과, 도서관과를 둔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조성 전반”을 “조성 및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문화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문예회관”

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6. 수변공간 개발 관련 종합계획 수립

8.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17.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8. 경관조명 시설물 및 음악분수대 관리

19.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20.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 및 이용

21. 독서진흥 및 독서격차 해소

22.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3. 도서관 정보화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24.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25.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역 사회 협력

제5조의4의 제목 “(교육보육국에 두는 과)”를 “(교육복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복지국에 교육과, 청년과, 출생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제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 · 조정

2.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3.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청년종합정책 발굴 · 추진

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9. 대학 협력·유치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10. 저출산(고령) ·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1. 인구증가 및 출생지원 시책 발굴 · 추진

12. 여성복지업무

13.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

14.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15.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총괄 업무

16. 장애인 · 노인 · 장사업무

17.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18. 보육정책사업 추진 총괄

19.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20. 아동수당 지급

2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 · 입양 아동 지원

22.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지원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4.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지원

제5조의5제1항 중 “도로과, 교통과”를 “교통과, 도로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29호 및 제30호로 하고,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9호부터 제21호로 하고, 제20호(종전의 제17호) 중 “생활민원”을 “소규모 생활기반시설”로 하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제23호를 제22호로 하며, 제24호 및 제25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를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6의 제목 “(녹색도시국에 두는 과)”를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정원휴양과를 둔다.

제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 · 조정

2. 기후환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3.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 등) 인 · 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4.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5. 폐기물처리, 수질 · 대기 ·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6. 댐 · 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와 종량제 업무

8. 환경관련 각종 인 · 허가

9. 공해배출시설(대기 · 수질 · 소음 · 진동) 지도 감독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11.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12.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업무 종합 기획 · 조정

13.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관리

15. 생태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관리

16.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18.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19.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1.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 · 분쟁조정 업무

22.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 · 조정

23. 양묘사업

24. 산림재난 방지

25. 부정임산물 관리

26.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27.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28.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조정

29. 공원·유원지·광장 조성 및 관리

30.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및 운영

31. 가로공원 조성·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3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33. 도시숲,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34.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5. 휴양림 운영 기획 및 관리

36.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제7조의2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를 “보건과, 건강과, 위생과”로 한다.

제10조의2 중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를 “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로 한다.

제11조제4호,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가공제품 개발”을 “가공산업 육성·지원”으로 하며, 제14호를 제7호로 하고,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제25호를 제19호로 하고, 제26호를 제8호로

하며,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제21호(종전의 제28호) 중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을 “및 도시농업 기술 지도”로 하며, 제6호, 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량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

1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22. 농업기계 지원 전반

제14조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거목을 파목으로 하고, 파목(종전의 거목) 중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너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서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 및 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허목을 거목으로 한다.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분뇨 병합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실장, 홍보실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제7조제2항 중 “홍보소통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 「광양시 광영 ·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녹지과장”을 “정원휴양과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⑨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⑩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4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문화과장”으로 한다.

⑪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산업과장”을 “투자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산업과”를 “투자산업과”로 한다.

⑫ 「광양시 상징물 관리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소통실”을 “홍보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과”로 한다.

⑬ 「광양시 성황 ·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⑭ 「광양시 성황 ·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⑮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⑯ 「광양시 시민장(市民葬) · 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⑰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⑱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⑲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⑳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증진과장”을 “건강과장”으로 한다.

㉑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보육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㉒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출생가족과장”으로 한다.

㉓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민복지국장”을 각각 “총무국장”으로 한다.

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㉖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폐기물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생활폐기물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㉗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㉘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㉙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㉚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지털정보과장”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㉛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㉝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㉞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㉟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국장, 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㊱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투자경제과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기획실장,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㊲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㊳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청년과장, 교육과장”으로 한다.

㊴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보육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㊵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㊶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㊷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경제국장, 교육과장, 농업과장”으로 한다.

㊸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㊹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실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미래산업국·관광문화환경국·교육보육국·안전도시국·녹색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둔다.	제3조(국,실의 설치) ① ---------- 총무국·경제국·관광문화국·교육복지국·안전도시국·환경녹지국----------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AI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기획실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7. (생 략)	11.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③·④ <삭 제>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6. ---------- 물품구매 ----------
⑥ 홍보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홍보실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7. 홍보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삭 제>
8. 시장 직소민원 상담 관리(온라인 포함)	<삭 제>
9. 미디어 홍보소통 시책개발 및 운영	6. ---------- 홍보 ---
10. ~ 13. (생 략)	7. ~ 10.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⑦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융·복합 시 프로젝트 추진	
2.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3.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4. 타기관(중앙·도·타시군) 정책방향 조사 및 분석	
<신 설>	⑧ AI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용 생성형 AI 도입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시민AI 교육 및 지원
	4.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5.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

현 행	개 정 안
	링 및 조정
제4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제4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후생복지 및 보안	3. 공무원 복무지도·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표창·징계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표창·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관리	5.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6. 조직 및 인력진단
7.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7.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8.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8. 기록관리 총괄 및 기록관 운영
9.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9.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협약 등
10.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
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균	11.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

현 행	개 정 안
형발전	역 조정
12.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12.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13. 기록관 운영	13.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4.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협약 등	14.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 지방세 부과 총괄	1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16.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17. 시금고 계약관리 ,	17.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18.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1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9.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19.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0. 사회연대경제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추진
21.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21. 소통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시책 발굴
22.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2.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23. 세입·세출·결산·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23. 국제화 시책 및 해외도시 간 다각적 교류 추진
24. 자금배정·수급 관리	24. 지방세 부과 총괄
2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25.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2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26. 시금고 계약관리
2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	

현 행	개 정 안
2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29.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3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 31.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32. 개별공시지가 업무 3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34.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35.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36.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업무 37. 장애인・노인・장사업무 38.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 운영 39.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27.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처리 28.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29.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0.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31.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33. 세입・세출・결산・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34. 자금배정・수급 관리 3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3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3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 3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39.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현 행	개 정 안
	40.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41.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4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 43.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44. 개별공시지가 업무 45.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46.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47.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5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투자산업과, 경제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4.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5. 신산업, 벤처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7.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9.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9.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0.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11.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동조합 지원 관리	12.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3.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3.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4.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4. 노동조합 지원 관리
15. 인구증가 시책 발굴·추진	15.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6. 청년종합정책 발굴·추진	16.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발굴	18. 철강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9.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현 행	개 정 안
20.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2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2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3.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25.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6.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7. 항만물류·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추진 28.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29.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30. 공유수면 관리 및 점·사용허가 31. 내수면 및 해양수산업 업무 총괄 32. 항만, 수산 관련 업무 전반	19.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0.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1. 항만물류·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추진 22. 공유수면 관리 및 점·사용허가 23. 해양수산업무 전반 2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25. 민간개발 인·허가 26.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27. 국가산단 개발 및 인·허가 28. 국가산단 관리 전반 29. 용지 및 지장물 보상 30. 지능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31.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 관리 전반 32. 개인정보 및 보안 내부관리계획 수립 33. 스마트시티 구축 및 추진 34. 통신 관리 전반

현 행	개 정 안
33. 신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4.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 등) 인·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3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36.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37. 민간개발 인·허가 38.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39. 국가산단 개발 및 인·허가 40. 국가산단 관리 전반 41. 용지 및 지장물 보상 42. 지역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43.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44. 모바일 정책 수립 45.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46.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5조의2(관광문화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과, 관광개발과, 문화과, 체육과, 시설관리과, 도서관과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관광문화국장----------.
<신 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6. 수변공간 개발 관련 종합계획 수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삭 제>
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	7. ----------조성 및 관리·운영
<신 설>	8.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7. ~ 9. (생 략)	9. ~ 11.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8. 문화행사 추진 총괄	10. 문화예술행사 --
10. 문예회관 운영 전반	12. 문화예술회관 ----------
11. ~ 14. (생 략)	13. ~ 16.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삭 제>
16.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7.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17.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	18. 경관조명 시설물 및 음악분수대 관리
19.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19.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20.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	20.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 및 이용
2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21. 독서진흥 및 독서격차 해소
22.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22.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 설>	23. 도서관 정보화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신 설>	24.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신 설>	25.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역 사회 협력
제5조의4(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제5조의4(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	① 교육복지국에 교육과, 청년과, 출생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교육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

현 행	개 정 안
영	정
2.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	3.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6. 청년종합정책 발굴·추진
7. 아동수당 지급	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9. 어린이복지재단 운영	9. 대학 협력·유치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10. 여성복지업무	10.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1.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이용	11. 인구증가 및 출생지원 시책 발굴·추진
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2. 여성복지업무
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13.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
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15.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총괄 업무
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16. 장애인·노인·장사업무

현 행	개 정 안
	17.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18. 보육정책사업 추진 총괄 19.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20. 아동수당 지급 2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입양 아동 지원 22.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지원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4.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지원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 11. (생 략) 12. ~ 13. (생 략) 14. (생 략) 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 교통과, 도로과, ----------. ② ----------. 1. ~ 8. (현행과 같음) 15. ~ 17.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와 같음) 29. ~ 30. (현행 제12호부터 제13호와 같음)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업설계·시공·준공 등 추진	
16. (생 략)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	20.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불편신고 처리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 22. (생 략)	9. ~ 12. (현행 제19호부터 제22호와 같음)
23. (생 략)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24. ~ 25. (생 략)	13. ~ 14. (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26. ~ 30. (생 략)	31. ~ 35. (현행 제26호부터 제30호와 같음)
31. ~ 36. (생 략)	23. ~ 28. (현행 제31호부터 제36호와 같음)
37. ~ 39. (생 략)	36. ~ 38. (현행 제37호부터 제39호와 같음)
제5조의6(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제5조의6(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정원휴양과를 둔다.
② 녹색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조정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현 행	개 정 안
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3.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5. 가로공원 조성·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후관리 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9.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2.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14.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2. 기후환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3.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 등) 인·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4.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5.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6.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 8.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9.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11.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12.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업무 종합 기획·조정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현 행	개 정 안
	15. 생태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관리 16.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18.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19.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1.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업무 22.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 23. 양묘사업 24. 산림재난 방지 25. 부정임산물 관리 26.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27.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28.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조정 29. 공원·유원지·광장 조성 및 관리

현 행	개 정 안
	30.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및 운영
	31. 가로공원 조성·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3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33. 도시숲,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34.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5. 휴양림 운영 기획 및 관리
	36.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를 둔다.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 보건과, 건강과, 위생과----------.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 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소관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량 수급계획 수립 추진	<삭 제>
5.·6. (생 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식량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
7. ~ 10. (생 략)	9.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가공제품 개발	13. ---------- 가공산업 육성·지원
12.·13. (생 략)	14.·15.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신 설>	1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14.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7. (현행 제14호와 같음)
15.·16. (생 략)	17.·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17.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	<삭 제>
18. 양묘사업	<삭 제>
19. 산림재해 방지	<삭 제>
20. 부정임산물 관리	<삭 제>
21.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삭 제>
22.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삭 제>
25. (생 략)	19. (현행 제25호와 같음)
26. (생 략)	8. (현행 제26호와 같음)
27. (생 략)	20. (현행 제27호와 같음)
28. 식량작물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	21. ---------- - 및 도시농업 기술 지도
<신 설>	22. 농업기계 지원 전반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소관사무) ---------- ---------- -.
1. 삭 제	
2. 물관리센터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폐수, 분뇨 병합처리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파. 오·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하.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거.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 관리 운영	파. 공공하수처리시설 ------
너. 위생처리장(초남) 운영	<삭 제>
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삭 제>
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및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업무	<삭 제>
머.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삭 제>
버.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쟁조정 업무	
서. (생 략)	하. (현행 서목과 같음)
어.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삭 제>
저.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허. (생 략)	거. (현행 허목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0호

붙 임 :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회원”이란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 활동”이란 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

6.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협의회의 대표자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성과평가 및 반환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1호

붙 임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장관----------.
제4조(책무) ①·②(생 략)	제4조(책무)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②(생 략)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제11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로 수당을 받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2호

붙 임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사람”을 “사람 및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정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혼 사실과 소멸 사유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혼으로 소멸한 수급권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30,000원 지급”을 “3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300,000원 지급”을 “3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100,000원 지급”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 참전유공자 ----------. ---------- ----------.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1. ---------- 국가보훈부장관---------- ---------- ---------- ---------- 사람 및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정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신 설>	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혼 사실과 소멸 사유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재혼으로 소멸한 수급권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	2. ---------- 30,000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3. ---------- 300,000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4. ---------- 100,000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제9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⑥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3호

붙임 :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을 “가문의 병역이행자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가”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를 “병무청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병무청에서 ----------.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4호

붙임 :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분진·기름·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대상)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광양시 관내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이용료)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세탁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세탁소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5호

붙임 :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와병행하는 공급관으로 부터”를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시설비 분담금을 말한다.

9.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지역 내 가스공급시설의

안전한 설치 및 매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노후 담벼락 등의 최소한의 구조적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② 시장은 보조금 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치에 필요한 노후 담벼락 보강 경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0호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인입배관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인입배관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50%까지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환경개선비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자의 현장 기술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진

2. 환경개선비 필요 사유 및 공사 범위(전체 또는 부분 보수)의 적정성 검토

3. 시공업체의 견적서 및 산출 내역서

② 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환경개선비의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제2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광양시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병행하는 공급관으로 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으로부터 --------. 7.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 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시설비 분담금을 말한다.
<신 설>	9.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지역 내 가스공급시설의 안전한 설치 및 매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노후 담벼락 등의 최소한의 구조적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10.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70퍼센트,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이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한한다.

상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한한다. 다만,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미만이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로개설, 굴착 등 공익사업추진 구간은 시장이 판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산출한 총공사비 중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선정된 구간은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치에 필요한 노후 담벼락 보강 경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조제10호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인입배관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인입배관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50%까지 지원

<신 설>	제6조의2(환경개선비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자의 현장 기술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진 2. 환경개선비 필요 사유 및 공사 범위(전체 또는 부분 보수)의 적정성 검토 3. 시공업체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② 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환경개선비의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생 략)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 20일 ----------.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6호

붙임 :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는 무형유산의 보전·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2.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형유산
3.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개행사의 개최
2.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심의)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 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 관리 및 전승 활동
2. 무형유산의 공개행사, 공연, 교육 및 홍보
3. 무형유산의 조사 · 기록 및 전승자료 제작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할 때 무형유산의 전승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성과평가, 반환 및 제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7호

붙임 :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학교”란 광양시에 소재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양시의 권한과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광양경찰서장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회복·가해학생의 선도·재발방지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업과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처분 등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의 기본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4.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회복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해학생의 선도·재발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8.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청소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현황 및 정책수요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공개한 통계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가해·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또는 의견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개념·유형 및 대처방법

2.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 및 신고·상담방법

3. 따돌림 및 집단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7. 가해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배포, 캠페인 및 그 밖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시장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예방의 날 및 학교폭력예방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학생 등의 회복지원) ① 시장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청소년복지서비스 연계

2.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의 연계

3. 법률지원기관 및 권리구제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4. 학습권 회복을 위한 교육지원청·학교 등 교육 관계 기관과의 연계

5. 피해학생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복지서비스 연계

6.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및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참여 여부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감경·변경 등의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른 법령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사업에 따라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 지원) ① 시장은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학생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연계

2. 청소년 선도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계

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학교폭력 재발방지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5. 그 밖에 시장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법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 등이 실시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선도·교육을 대체하거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할 교육지원청

2. 광양경찰서

3.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정신건강·의료·복지 관련 기관

6. 법률지원 및 권리구제 관련 기관

7. 학교폭력 예방·상담·청소년보호 관련 법인·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예방교육, 상담·복지서비스 연계, 홍보, 정책정보 공유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력사항
2. 기관별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추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학생의 보호·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가해학생의 선도·재발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의 구성·위원의 임기·해임 또는 해촉·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②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지역협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개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피해 여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특정 학생 또는 관계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정서·복지 회복 지원사업
3. 가해학생의 선도·재발방지 및 보호자 교육사업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사업
6. 학교폭력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관련 사업
7. 사이버폭력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사업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정책수요 조사·연구
3. 상담·복지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가해·피해 여부의 판단, 법정 조치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위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과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강정보, 상담기록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보호자, 신고자·고발자 등과 관련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사·연구 및 사업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광양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10.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48호

붙임 :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존속기한) ---------- -- 2031년 12월 31일--------- -. ---------- ---------- ---------- ---------- ----------.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정 제479호

붙 임 :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채용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인사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예산부서의 장”이란 예산 편성 및 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에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원칙)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기간제근로자가 학습,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인사부서의 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남녀고용평등 준수) 기간제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7조(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① 채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채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10월 말까지 사용부서 및 예산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예산부서는 인사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채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채용계획을 해당 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 근로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인사부서의 장이 종합계획에 의해 직접 채용하고, 사용예산을 편성한다.

⑥ 예산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예산을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⑦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 인사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이 요구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절차 및 사전협의)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시 누리집을 포함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 3회 이상 재공고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 고용24 구직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채용하

여야 하며, 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채용부서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자격기준, 계약기간,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채용 공고 이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인사부서의 장은 계약 대상 기간제근로자가 부서 또는 직종을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시)와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로계약 체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채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 다음 사항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저촉 여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저촉 여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저촉 여부
4.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적용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사람

⑦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구비서류)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과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전 신원조회나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근로계약 체결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이 결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각 2부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는 담당업무의 특성과 부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별지 제3호서식)

2.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1부(별지 제4호서식)

3. 기간제근로자 개인별 신상카드 1부(별지 제5호서식)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한 때에는 체결 및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관리 및 신분증) ①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간제근로자 개인별 신상카드(별지 제5호서식)

②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철 (별지 제3호서식)

2.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기간제근로자 개인별 신상카드(별지 제5호서식)

4.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

5. 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제1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개인별 신상카드의 기록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13조(복무의무)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된다.

3.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기간제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기간제근로자는 시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15조(출근 및 결근) ① 기간제근로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시 차질이 없도록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기간제근로자는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17조(근로시간 등)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제2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무급휴무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19조(특별휴가) 기간제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제20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병가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산전·산후 휴가 등의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육아휴직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5.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2세 이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8. 그 밖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장 보수

제23조(보수의 구성항목 등)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시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 단가는 해당 연도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 이상이어야 하며,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 근로시간 등을 연장하여 근로한 경우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 근로 시 시간급 단가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③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단가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급 단가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보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신규 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장 퇴직 및 계약의 해지

제25조(퇴직)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그 퇴직일자
2.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한 날.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일은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을 것
3. 기간제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의 다음 날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른다.

1.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

④ 근로계약의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용해지 결과서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

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조사에 관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표창)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 개선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근로자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3.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시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나. 음주운전

   다. 근로시간 내 음주, 근무지 이탈

   라. 폭행 및 폭력

   마. 그 밖에 범죄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7.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주거나 제공받았을 경우

8.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을 하였을 경우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한다.

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근로자의 징계는 소속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처벌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은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계 법령과 「광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 요청서

<table>
<tr><td>사용부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사업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4"></td></tr>
<tr><td>사업세부내용</td><td colspan="4">○
○
○</td></tr>
<tr><td>신규/계속여부</td><td colspan="4">○</td></tr>
<tr><td>채용인원</td><td>명</td><td>채용기간</td><td colspan="3">20 . . . ~ 20 . . . (개월)</td></tr>
<tr><td>채용방식</td><td colspan="5">□ 공개채용 □ 기존인력 재계약</td></tr>
<tr><td>채용사유</td><td colspan="5">□ 9개월 이내 일시·간헐적 사업 □ 55세 이상 고령자 등 사용(고령자 친화직종)
□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전문적 업무(박사학위 등) □ 휴직 대체인력
□ 정부 복지실업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td></tr>
<tr><td>필요성</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직종 및
담당업무</td><td>직종명</td><td colspan="4">□</td></tr>
<tr><td>담당업무
(구체적)</td><td colspan="4">○
○
○</td></tr>
<tr><td rowspan="5">소요예산</td><td rowspan="4">소요예산
(단위 : 천원)</td><td colspan="4">재원별</td></tr>
<tr><td>계</td><td>국비</td><td>전남광주통합
특별시비</td><td>시비</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table><tr><td>예산총액</td><td>기본급</td><td>각종수당</td><td>보험료</td><td>기타</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예산 세부산식</td><td colspan="4">○</td></tr>
<tr><td>보수지급기준</td><td colspan="5">□ 적정임금 □ 생활임금 □ 최저임금 □ 일일노임단가 □ 인건비지침 □ 기타</td></tr>
<tr><td>기타사항</td><td colspan="5">○
○</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협의 요청서

<table>
<tr><td>사용부서
(팀 명)</td><td colspan="2">(　　팀)</td><td>근로직종</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2">(남,여)</td><td>생년월일</td><td>(　세)</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2">(　　월　　일간)</td><td>사용단가</td><td>원/일</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4"></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4">(집)　　/ (휴대폰)</td></tr>
<tr><td>보유자격·
면 허 증</td><td colspan="4"></td></tr>
<tr><td>규정 제4조 단서조항 중 적용되는 근로조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9">기간제근로자
근 로 경 력</td><td>부 서 명</td><td>직　　종</td><td>근로기간</td><td>누적기간</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작성자(근로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팀　장) :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2. 근무장소(부서) :

3. 업무의 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소정근로시간 : ___시___분부터 ___시___분까지

– **휴게시간 :** __시 __분 ~ __시 __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무일/휴일

– 근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 단위)근무 혹은 매주 _요일부터 _요일까지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근로계약 연도가 이어져 있을 경우 연도별로 보수 기재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예금계좌번호 : 농협 000-00-000000　　예금주 :　　)

7. 휴　가

- 휴가는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정한 바를 따른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복무 등

- “근로자”의 복무 등 근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체 명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대 표 자 : 광 양 시 장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5.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예금계좌번호 : 농협 000-00-000000 예금주 : 홍 길 순)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

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예금계좌번호 : 농협 000-00-000000　　예금주 : 홍 길 순)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복무 등

- "근로자"의 복무 등 근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체 명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대 표 자 : 광 양 시 장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사용부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자격증	학 력	최초채용일자	채용기간	업무내용	단가(원)	소요예산액(원)				제4조단서해당조항	담당자
												계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시비		

[별지 제5호서식]

기간제근로자 개인별 신상카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사용단가	원
	사용기간	부터		까지 (년 월 일)		
	주 소					
	규정 제4조 단서 해당 근로조건					

최종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비고

기간제 근로 경력	부 서 명	직 종	근 로 기 간	누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 격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 고충·애로 및 건의사항

※ 풀베기사업, 꽃가꾸기 사업, 공원관리, 도심지정비 등 일시적 근로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 **기간제근로자**

○주소 :

○성명 :

☐ **근무상황 내역** (앞면)

부서명 :																
일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7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협의 결과서

사용부서 (팀 명)	(팀)		근로직종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세)	
사용기간	(월 일간)		사용단가	원/일	
주 소					
최종학력					
연 락 처	(집) / (휴대폰)				
보유자격· 면 허 증					
규정 제4조 단서 조항 중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간제근로자 근 로 경 력	부 서 명	직 종	근로기간	누적기간	
협의결과			사용가능기간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관서·부서명) ○○○원(직종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 · 퇴근시간 및 모든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 ·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상기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관서명)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사용해지 결과서

사용부서	사용해지자		직 종	해지일자	해지사유	비고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결 재 란			신분증 번호	발 급 연 월 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별지 제11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table>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
<tr><td>(한자)</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경력·
재직
사항</td><td colspan="2">근 무 기 간</td><td rowspan="2">직명</td><td rowspan="2">근 무 부 서</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용 도</td><td colspan="4"></td></tr>
</table>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별지 제1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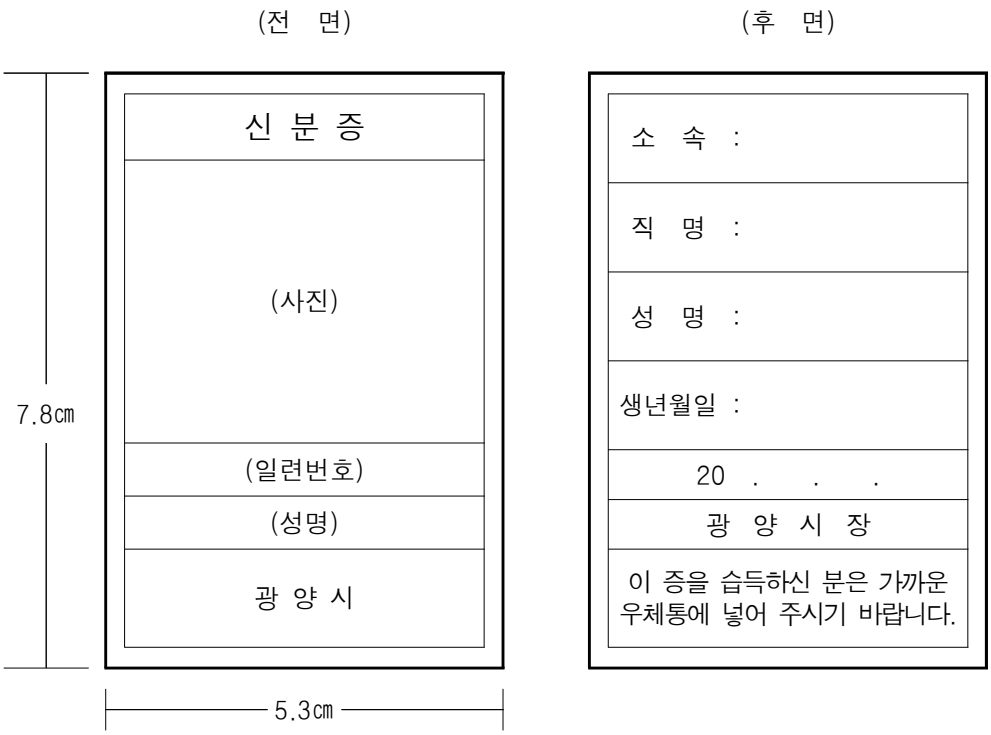

○ 규격: 530㎜ × 780㎜

○ 재질: 아트지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정 제480호

붙 임 :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 ---------- ---------- ----------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②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⑦·⑧ (생 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광양시 고시 제 2026 - 291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1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38-9 외 2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1. 11.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3건					
1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3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26번길 15-14	20261111	20200916	posco 광양제철소에서 인용 및 기초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7길 12-5 (마동)	20261111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황금동 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고길3길 24 (황금동)	20261111	20211215	사업지구 내 편입된 마을이름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공고 제2026-2361호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나. 명 칭 :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광양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가. 면 적 : 68,259㎡

나. 규 모 : 펌프장 2개소, 교량 2개소 신설, 하천(양안) L=1.7km 정비

4. 사업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사업 착공일 : 2024년 1월

나. 준공 예정일

1) 당 초 : 2027년 1월

2) 변 경 : 202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변경] : 붙임 참고

6. 열람기간 및 장소 [변경없음]

가. 장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안전과

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안전과(061-797-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합계			**239필지**	**68,259**								
1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78-7	3		답		광양시				
2			79-5	37		답		광양시				
3			80-15	2		답		광양시				
4			80-13	327		대		광양시				
5			80-14	272		대		광양시				
6			80-16	328		도		광양시				
7			80-26	454		답		광양시				
8			80-2	252		도		광양시				
9			80-10	266		대		광양시				
10			80-22	21		도		광양시				
11			80-11	293		대		광양시				
12			80-25	5		도		광양시				
13			1321-14	125		구		국 (건설부)				
14			산252-1	740		임		광양시				
15		옥곡면 신금리	1530-2	189		구		국 (건설부)				
16			1270-7	119		도		전라남도 교육감				
17			1269-5	367		도		광양시				
18			1270-3	38		도		광양시				
19			1270-8	423		대		광양시				
20			1536	23		도		국 (건설부)				
21			1271-5	260		대		광양시				
22			1271-2	257		대		광양시				
23			1272-1	528		대		광양시				
24			1276	473		대		광양시				
25			산11-16	318		임		광양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26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산11-18	10		임		광양시				
27			산11-17	13		임		광양시				
28												
29			산11-14	474		임		광양시				
30			산11-19	957		임		광양시				
31			산7-9	23		임		광양시				
32			1279-2	194		대		광양시				
33			1279-1	267		도		광양시				
34			산7-10	13		임		광양시				
35			1280-8	18		도		광양시				
36			1280-9	6		도		광양시				
37			1535-91	16		도		국(기획재정부)				
38			1535-88	471		도		국 (건설부)				
39			1535-55	221		도		국(기획재정부)				
40			1535-90	66		도		광양시				
41			1287-1	51		도		광양시				
42			1291-6	23		답		광양시				
43			1279-3	18		도		광양시				
44			1535-1	34		도		광양시				
45			1278-1	650		대		광양시				
46			1278-2	136		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138*	이*남				
47			1292-1	314		답		광양시				
48			1278-3	325		대		광양시				
49			1277-2	60		천		광양시				
50			1277-1	374		답		광양시				
51			1293-1	1,504		답		광양시				
52			1294-1	426		답		광양시				
53			1295-1	1,008		답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357-*	정*주				
54			1293-2	56		천		광양시				
55			1295-4	190		답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357-*	서*호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56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95-3	86		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14*	서*실				
57			1288-3	332		답		광양시				
58			1296-3	1,413		답		광양시				
59			1296-2	367		천		광양시				
60			1286-10	139		답		광양시				
61			1286-11	157		답		광양시				
62			1507-11	13,702		천		국(건설부)				
63			1285-3	289		답		광양시				
64			1297-1	651		답		광양시				
65			1297-2	440		천		광양시				
66			1365-3	560		답		광양시				
67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64	258		대		광양시				
68			1361-1	615		답		광양시				
69			1362-1	97		전		광양시				
70			1361-2	228		천		광양시				
71			1369-3	38		답		광양시				
72			1360-1	439		답		광양시				
73			1535-89	229		도		국 (건설부)				
74			1359	50		답		광양시				
75			1359-1	69		답		광양시				
76			1354-1	185		대		광양시				
77			1370-2	14		도		광양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78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56-3	10		대		광양시				
79			1358-4	71		답		광양시				
80			1356-4	5		대		광양시				
81			1354-13	332		답		광양시				
82			1354-5	423		답		광양시				
83			1354-10	165		대		광양시				
84			1507-133	41		천		국 (건설부)				
85			산11-9	306		임		광양시				
86			1299-5	280		답		광양시				
87			산11-10	345		임		광양시				
88			1299-8	35		답		광양시				
89			1299	137		잡		광양시				
90			1299-7	2		잡		광양시				
91			1526-45	166		도		국 (건설부)				
92			1299-4	304		대		광양시				
93			1299-6	26		도		광양시				
94			1299-3	11		답		광양시				
95			1299-1	349		대		광양시				
96			1298-7	65		창		광양시				
97			1298-1	421		창		광양시				
98			1298-4	297		대		광양시				
99			1298-6	33		도		광양시				
100			1298-3	330		대		광양시				
101			1298-2	330		대		광양시				
102			1304-3	248		대		광양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03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05	175		대		광양시				
104			1298	291		답		광양시				
105			1306-1	71		도		광양시				
106			1526-46	767		도		국 (건설부)				
107			1307	221		대		광양시				
108			1137-13	131		대		광양시				
109			1307-1	281		대		광양시				
110			1137-10	351		대		광양시				
111			1308	122		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0*	서*두				
112			1307-2	264		대		광양시				
113			산25-21	102		임		광양시				
114			1307-3	212		대		광양시				
115			1311-15	49		대		광양시				
116			1312-8	96		대		광양시				
117			1311-14	2		대		광양시				
118			1311-16	2		대		광양시				
119			1312-9	359		대		광양시				
120			1312-17	15	3/4	대		광양시				
121					1/4	대	광양시 공영로 39, 10*동140*호(중동,호반리젠시빌)	박*숙	김*분	광양시 옥곡면 명주*길	가압류	
									임*정	순천시 삼산로 103-13 (1*6동 1*03호)	가압류	
122			1312-11	53		대		광양시				
123			1312-16	21		대		광양시				
124			1312-7	248		대		광양시				
125			1312-15	82		대		광양시				
126			1526-37	190		도		국 (건설부)				
127			1312-2	367		도		미등기1	서*주	옥곡면 신금리 11*7	토지대장상 소유자	
128			1313-21	185		도		광양시				
129			1313-3	199		대		광양시				
130			1337-8	613		대		광양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31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38-1	40		답		광양시				
132			1338-9	40		답		전라남도				
133			1338-10	8		답		전라남도				
134			1338-4	52		답		광양시				
135			1356-5	41		대		광양시				
136			1354-7	30		답		광양시				
137			1354-12	145		대		광양시				
138			1354-8	337		대		광양시				
139			1354-14	13		대		광양시				
140			1353-1	1,462		대		광양시				
141			1353-7	144	71.3/341	대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71-*	임*길	범*석유㈜ 외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 외 2	가압류	
142					198.4/341	대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39-*	광양새마을금고				
143					71.3/341	대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56 화진그린맨션 40*호	김*현				
144			1354-2	324		도		국(건설부)				
145			1352-2	347		도		전라남도				
146			1352-6	148		답		광양시				
147			1353-2	231		도		미등기2	서*주	옥곡면 신금리 1*37	토지대장상소유자	
148			1352-5	492		대		광양시				
149			1357-5	137		도		광양시				
150			1352-4	660		답		광양시				
151			1352-9	148		창		광양시				
152			1352-10	171		창		광양시				
153			1507-12	63		천		광양시				
154			1507-147	25		천		국(건설부)				
155			1535-92	9		도		국(건설부)				
156			1352-8	22		창		국(기획재정부)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57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51	215		답		광양시				
158			1378-21	780		대		광양시				
159			1378-14	138		답		광양시				
160			1379	644		답		광양시				
161			1350-10	573		답		광양시				
162			1350-7	2		답		광양시				
163			1335-2	316		철		국(국토교통부)				
164			1507-123	709		천		국(건설부)				
165			1335-8	278		철		국(국토교통부)				
166			1507-125	93		천		전라남도				
167			1507-126	77		천		전라남도				
168			1338-19	160		답		광양시				
169			1507-14	27		천		전라남도				
170			1338-14	185		잡		전라남도				
171			1338-17	5		답		광양시				
172			1338-18	1		수		국(환경부)				
173			1338-11	46		과		광양시				
174			1338-13	2		수		국(환경부)				
175			1338-20	1		수		국(국토교통부)				
176			1339-5	15		수		국(환경부)				
177			1338-21	2		수		국(환경부)				
178			1339-11	50		수		국(건설부)				
179			1339-8	174		수		국(환경부)				
180			1339-10	10		수		국(환경부)				
181			1339-3	4		답		광양시				
182			1341-4	17		수		국(환경부)				
183			1341-7	4		수		국(국토교통부)				
184			1507-15	46		천		전라남도				
185			1507-13	266		천		전라남도				
186			1339-9	74		천		광양시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87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41-1	944		답		광양시				
188			1350-5	118		철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김*록				
189			1399-7	314		철		국(국토교통부)				
190			1350-9	103		철		전라남도				
191			1350-8	140		천		전라남도				
192			1399-5	189		철		국(국토교통부)				
193			1347-1	3		제		국(농림식품축산부)				
194			1347-4	44		제		국(농수산부)				
195			1346-38	9		제		광양시				
196			1346-33	114		답		전라남도				
197			1346-32	54		제		광양시				
198			1346-13	12		답		전라남도				
199			1346-8	29		제		광양시				
200			1346-25	16		제		광양시				
201			1346-16	1		답		전라남도				
202			1346-17	23		답		전라남도				
203			1346-34	7		답		전라남도				
204			1346-1	81		답		전라남도				
205			1346-20	1		답		전라남도				
206			1346-30	23		수		국(건설부)				
207			1346-14	3		답		전라남도				
208			1346-40	77		수		국(환경부)				
209			1346-42	4		수		국(환경부)				
210			1346-22	17		수		국(환경부)				
211			1346-19	18		수		국(환경부)				
212			1346-44	21		수		국(환경부)				
213			1346-12	2	1/3	답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	박*문				
214					1/3	답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14*	박*귀				
215					1/3	답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13*	박*홍				
216			1346-27	4	1/3	제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	박*문				

번호	시군구	면리	편입		지분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217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46-27	4	1/3	제	광양시 옥곡면 11*9	박*귀				
218					1/3	제	광양시 옥곡면 11*1	박*홍				
219			1346-9	16		제		광양시				
220			1346-41	235		천		광양시				
221			1346-45	95		제		광양시				
222			1347-5	215		천		국(농림식품축산부)				
223			1507-148	783		천		국(건설부)				
224			1350-2	227		천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김*록				
225			1342-2	626		천		광양시				
226			1341-6	800		답		광양시				
227			1537-1	562		도		국(건설부)				
228			1413-3	17		답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8*	장*석				
229			1412	152		답		광양시				
230			1413-1	1,127		답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138*	장*석				
231			1411-1	256		답		광양시				
232			1410-1	17		답		광양시				
233			1341-3	993		답		광양시				
234			1414-3	1,965		답		광양시				
235			1410-8	388		답		국(건설부)				
236			1415-5	143	1/2	답	전남 순천시 왕궁길 95, 10*동 50*호(조례동, 송촌프라임)	김*경				
237					1/2	답	전남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3, 10*동 170*호(남해오네뜨)	이*덕	광양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	근저당권	
238			1410-28	278		도		국(건설부)				
239			1333-1	23		도		국(건설부)				
240			1334-8	5		도		국(건설부)				
241			1334-14	15		도		광양시				
242			1410-9	155		도		국(건설부)				
243			1410-23	312		도		국(건설부)				
244			1380-9	1,314		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능대로715번길 22, 140*동 110*호(논현동,주공아파트)	김*래				
245			1384-3	348		답		광양시				
246			1349-1	221	1/5	답	광양시 중동리 40*	서*조				
247					4/5	답		불명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6-239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강○○			
	대표자 (성 명)	강○○	주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	
소하천명		소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34 일원			
	면적	1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2016. 11. 19.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농작물 경작)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6-240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소하천명		금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진월면 송금리 600-3번지 일원			
	면적	1.02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6. 11. 11. ~ 2031.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전신주 4본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